

「2019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 3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19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2019년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를 추가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재난관리기금

2019년도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 지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 획 액	기정계획액	증감
합 계(8건)	22,434,559	22,726,120	△291,561
통합관리기금	6,121,879	6,121,879	0
사회복지기금	8,664,014	8,664,014	0
체육진흥기금	4,342,070	4,522,070	△180,000
식품진흥기금	99,730	111,291	△11,56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7	267	0
재난관리기금	1,093,066	1,193,066	△1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2,728	82,728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30,805	2,030,805	0

Ⅲ. 기금변경 개요

□ 기금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금조성계획액은 기정대비 291백만원이 감소한 22,434백만원 임.

[단위:천원]

기 금 명	계 획 액	기정액	증감
계	22,434,559	22,726,120	△291,561
통합관리기금	6,121,879	6,121,879	0
사회복지기금	8,664,014	8,664,014	0
체육진흥기금	4,342,070	4,522,070	△180,000
식품진흥기금	99,730	111,291	△11,56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7	267	0
재난관리기금	1,093,066	1,193,066	△1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2,728	82,728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30,805	2,030,805	0

IV. 검토결과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03백만원 증액된 총 14,751백만원이며
 - 세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200천원과
재난관리기금에서 1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 세출은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각각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과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음.

<기금운용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획 액		기 정 계 획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14,750,698	100.00%	14,647,498	100.00%	103,200	0.00%
평창군통합관리기금	2,315,965	15.70%	2,315,965	15.81%	0	0.00%
평창군사회복지기금	5,233,646	35.48%	5,233,646	35.73%	0	0.0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156,200	14.62%	2,156,200	14.72%	0	0.00%
평창군식품진흥기금	78,021	0.53%	74,821	0.51%	3,200	4.10%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267	0.41%	60,267	0.41%	0	0.0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2,293,066	15.55%	2,193,066	14.97%	100,000	4.36%
평창군옥외광고 발전기금	82,728	0.56%	82,728	0.56%	0	0.00%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530,805	17.16%	2,530,805	17.28%	0	0.00%

나. 기금별 변경내역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지출계획

- ▶ 수입은 기정대비 변경이 없으며
- ▶ 지출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용자성 사업비인 「2019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에 180,000천원을 증액 편성함.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156,200	2,156,200	0	합 계	2,156,200	2,156,200	0
예탁금회수	805,290	805,290	0	비용자성사업비	230,000	50,000	180,000
예치금회수	1,276,651	1,276,651	0	예치금	1,926,200	2,106,200	△180,000
이자수입	74,259	74,259	0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지출계획

- ▶ 수입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3,200천원 증가한 78,021천원이며 그 외 다른 항목은 기정대비 변경 없음.
- ▶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인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외 1건으로 3,200천원이 증액된 45,480백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2018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11,561천원을 편성함.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78,021	74,821	3,200	합 계	78,021	74,821	3,200
보 조 금	37,200	34,000	3,200	비용자성 사업비	45,480	42,280	3,200
예탁금 원금회수	26,250	26,250	0	예 치 금	20,980	32,541	△11,561
예 치 금 회 수	7,588	7,588	0	기타지출	11,561	0	11,561
이자수입	1,983	1,983	0				
기타수입	5,000	5,000	0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수입·지출계획

- ▶ 수입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00,000천원 증가한 250,000천원임.
- ▶ 지출은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음.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293,066	2,193,066	100,000	합 계	2,293,066	2,193,066	100,000
전입금	1,000,000	1,000,000	0	비용자성 사업비	1,200,000	1,000,000	200,000
보조금	250,000	150,000	100,000	예 치 금	1,093,066	1,193,066	△100,000
예치금 회 수	1,028,858	1,028,858	0				
이자수입	14,208	14,208	0				

다.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20%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정계획대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증액(360%)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감액(35.5%)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의 증액(20%)이 변경되었으며,
-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